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협치로
민주적 가치 실현! ”



2019. 10. 31.(목)
PM 14:00 ~ 16:00
충남도청 대회의실(4층)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개요

- 일시 : 2019. 10. 31.(목) 14:00 ~ 16:00
- 장소 : 충청도청 대회의실(4층)
- 주최 : 충청남도의회(신청 :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현 의원)
- 주제 :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운영방안 모색
- 참석예정 : 15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자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14:05~14:10	05' 인사말씀, 내빈소개 등	충청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 토 론 회 >		
※ 좌장 : 충청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14:10~14:30	20' 주 제 발 표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
14:30~15:20	50' 지 정 토 론	· 토론자 5명(각 10분)
15:20~15:40	20' 패 널 토 론	· 패널 간 자유토론
15:40~15:55	15' 청 중 토 론	· 참여자 전체
15:55~16:00	05' 정 리 및 폐 회	· 좌 장(충청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목 차

■ 주제발표

- ☞ 충청남도 민관협치형 위원회 현황과 개선방안 1
장수찬(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 충청남도 민관협치형 위원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7
김용현(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개선 체계 구축 필요성 23
박기남(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 청년,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로 성장하기 29
이민주(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
- ☞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 35
최재권((사)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이사장)
- ☞ 충청남도 위원회 실태 및 활성화 방안 39
구상(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협치로
민주적 가치 실현! ”



▣ 주제발표

충청남도 민관협치형 위원회 현황과 개선방안

장수찬(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청남도 민관협치형 위원회 현황과 개선방안

장수찬(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협치기반형 위원회 개요

(1)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정의 및 선정기준 (22개)

① 협치기반형 위원회란 무엇인가?

- 위원회의 정책과제가 민간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의 기본적인 자원= ‘네트워크’ + ‘민간정보’ + ‘현장 전문성’
- 위원회의 정책과제가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경우
- 위원회의 기본목적이 주권자들의 권리·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경우
- 위원회의 활동이 민관협치 방식으로 실행되는 경우에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 -주요 시민사회섹터의 자치역량 강화

② 협치기반형 위원회 선정기준

-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자원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위원회를 통해서 주권자의 권리가 신장될 가능성이 높은가?
-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가?
-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익적 이해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은가?

(2) 협치기반형 위원회(22개) 혁신의 필요성

① 위원회의 본래의 설치목적은 회복하는 것이 필요

-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22개 위원회는 본래의 설치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열리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대다수이다.
- 민간의 기본적인 자원= ‘네트워크’ + ‘민간정보’ + ‘현장 전문성’ 을 활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 위원회가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간의 자발성을 끌어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 위원회의 기본목적이 주권자들의 권리·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경우가 많으나, 정부주도로 진행되어 주권자들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 위원회의 활동이 시민들의 정부접근성을 보장하는 통로고 기능하지 못함.
- ② 위원회 활동과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 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이 정부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형식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시민들이 진정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함 →주권자의 권리가 신장될 가능성이 낮음.
 -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학습을 축적하여, 갈등을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확보하는데 실패

2. 민관협치형 위원회 운영 현황

(1) 민관협치 위원회 운영 평가 기준

① 위원회의 민간주도성 정도

- 민간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민간주도성)
- 민간 리더십 보장여부-민간위촉위원의 위원장-부위원장 직위여부

② 위원회의 활동성 수준

- 전체회의 년 간 개최횟수
- 분과위원회 활동성 수준-분과위원회 개최 횟수

(2) 주요 협치기반형 위원회 민간주도성 및 활성화 정도

- 설치근거: 관련 조례 및 시행령
- 위원회의 구성: 총 위원 수
- 위원회의 주도성이 민간에게 주어지는가?:위원장-부위원장의 민간 위촉직?
- 위원회의 민간위촉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를 능가하는가? (규정 및 임용)
- 위원회 전체회의가 1년에 개최되는 횟수는 몇 번인가?
-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정도-1년에 개최되는 횟수?

〈표 2-1〉 협치기반형 위원회 민간주도성 및 활성화 정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설치근거 (관련법규&시행령)	총위원수 (민간위촉)	개최횟수 (2018년)	
			전체	분과위
1.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발전·운영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운영위 설치)	위원장(민)-부위원장(민) (10~15명 이하)	회	
			?	?
2.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기본 조례 (정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기획실장 (20명이하-민간?)	회	
			?	?
3.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 진흥 조례 (평행교육협의회)	위원장: 도지사 부위원장: 부교육감 (20명이하-민간?)	?회	
			?	?
4. 양성평등 위원회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부위원장: 민간 (20명이하-민간-1/3이상)	1회	
			1	0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민간 (20명 이내-민간 1/2이상)	3회	
			3	0
6.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민간(조례?) 부위원장-민간 (15명 이내-민간?)	2회	
			2	0
7. 충남민관협치회의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위원장-민간, 도지사 부위원장-민간? (30명 이내-민간?)	11회	
			2회	9회
8.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호선)-민간 (150명 이내-민간으로구성)	22회	
			1회	21회
10. 안전관리민관협력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위원장-행정부지사 부위원장-민간위원호선 (30명 이내-민간?)	1회	
			1회	0
11.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원장-부위원장-민간 (15~40명, 민간다수)	4회(서면)	
			4회	0
12.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위원장-담당국장 부위원장-민간호선 (30명 이내-장애인1/2이상)	0	
			0	0
13. 지역보건의료심의위	보건의료심의위 설치 및 운영조례	위원장-행정부지사 부위원장-민간호선 (20인 이내, 민간?)	2회(1서면)	
			2	0
14. 사회적경제육성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	위원장-업무담당실·국장 부위원장-민간호선 (20명 이내, 민간?)	3회	
			3	0

협치기반형 위원회	설치근거 (관련법규&시행령)	총위원수 (민간위촉)	개최횟수 (2018년)	
			전체	분과위
15. 청년정책위원회	청년기본조례	위원장-민간위촉직호선 부위원장-민간위촉직호선 (20명이내, 민간?)	0	
			0	0
16.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 발전지원조례	위원장-도지사 부위원장-민간위촉 호선 (30명이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대표 등)	1	
			1	0
17. 인권위원회	인권 기본 조례	위원장-민간위촉 호선 부위원장-민간위촉 호선 (20명이내, 민간다수)	3회	
			3	0
18.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장-민간 호선 부위원장-민간 호선 (30명이내, 민간다수)	4회	
			2	2
19.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조례	위원장-민간 호선 부위원장-민간 호선 (20명 이하, 민간다수)	2회	
			2	0
20. 친환경급식지원심의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부지사 부위원장-민간호선 (15명이내, 민간다수)	1회	
			1	0
21.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민 간위촉직 호선 (130명, 민간다수)	0	
			0	0
22.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위원회설치규정없 음(센터설치규정)	3회	
			3	0

2. 위원회의 기본성격 (기본계획과 중간지원기관과의 관계)

- ① 위원회의 기능: ‘자문’ · ‘심의’ · ‘의결’ 혹은 ‘정책결정권’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위원회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문, 심의, 의결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갖는가?
- ② 위원회의 위상
 - 3~5년 기본계획 (혹은 중장기계획) 어느 수준에서 간여할 수 있는가?
 -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권자들의 정책선호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청회, 여론조사, 혹은 참여적 의사결정방식 등을 사용하는가?
 -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탁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간여(과업지시서, 감시·감독-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등)하는가?

- 중간지원기관(센터)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위원회가 심사·의결권을 가지고 있는가?)
(위원회는 센터장 혹은 위탁자로부터 1년 단위 사업계획·예산계획·사업결과 보고 등을 받고 있는가?)
- ③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세미나, 포럼, 워크숍, 정기회의, 비정기회의 등)에 필요한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 위원회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는 충분히 큰가?
- ④ 위원회의 공동운영여부
 - 위원회는 민-관이 명실공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위원회 공동운영을 위해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는가?

〈표 2-2〉 위원회의 기본성격 (기본계획 & 중간지원기관)

협치기반 위원회	위원회성격	기본계획수립 중간지원기관	예산 (천원)	비고
1.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심의·의결 정부-민간	기본계획조항 없음 자원봉사센터장 (도지사선임)	미공개	정부주도 (민간-형식) C TYPE
2.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정부주도	기본계획조항없음 소비생활센터 (도지사선임)	미공개	정부주도 C TYPE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정부-민간	기본계획조항없음 평생교육진흥원 (도지사선임)	-	정부주도 C TYPE
4.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민간위원중심	양성평등종합계획 센터설치조항없음	13,500	정부-민간 B TYPE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정부-민간	갈등관리과제 (선정기능없음) 갈등관리전문기구	16,650	정부-민간 B TYPE
6.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 민간주도	기본계획조항없음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원회선정)	5,000	민간주도 A TYPE
7. 충남민관협치회의	심의·자문 민간주도	기본계획조항명기 민관협치사무국 (협의관계)	20,000	민간주도 (정부-사무국) A TYPE

8.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정부주도-민간	회의운영 (전체-분과위-운영위) 사무국-기획관	31,500	정부주도 (민간-자문) D TYPE
10. 안전관리민관협력위	협의·조정 정부주도(민간)	안전관리위원회보조 집행기관에 不 간여	11,008	정부주도 (민간협의) D TYPE
11.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자문 정부주도(민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수급권자 발굴 등 정책(한정적)	-	정부주도 (민간자문) D TYPE
12.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정부주도(민간)	장애인복지시책 (이해당사자-자문)	-	정부주도 (민간자문) D TYPE
13. 지역보건의료심의위	자문 (정부주도-민간)	지역보건의료조사 건강증진사업-자문	-	정부주도 (민간자문) D TYPE
14.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 (정부주도-민간)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도지사)	-	정부주도 (민간-협의) B TYPE
15.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정부주도-민간)	기본계획수립(자문) 센터 없음	18,000	정부주도 (민간-협의) B TYPE
16.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민간주도-정부)	노동단체 노사관계지원사업 협의회사무국 (민간위탁)	-	민간주도 (정부협의) A TYPE
17. 인권위원회	심의·자문 (민간주도-정부)	기본계획수립 인권센터 (위원회-센터장선임)	37,800	민간주도 A TYPE
18.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심의·의결 (민간주도- 정부지원)	자치분권촉진계획 (사무국-자치행정국)	31,500	정부-민간 (민간- 협의주도) B TYPE
19. 체육진흥협의회	협의·자문 (정부지원-민간)	체육진흥지원 (생활체육경비지원) 운동경기부설치운영 (민간위탁-도지사)	13,500	정부-민간 (정부- 협의주도) B TYPE

20.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	심의 (정부지원-민간)	급식지원계획수립 광역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부지사)	-	정부-민간 (정부-협 의주도) B TYPE
21.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심의·자문 (민간주도-정부 지원)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수립 (관련부처-사무국)	2,700	정부-민간 (정부-협 의 주도) B TYPE
22. 도시재생위원회	역할 미규정 (센터설치조례)	도시재생지원 센터설치 조례 (센터-도지사, 공무원)	9,000	정부주도 C TYPE

3.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유형 분석

A. A유형 (민간주도형 위원회)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민관협치회의, 노사민정협의회, 인권위원회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의가 민간 주도적으로 진행

- 위원회가 공익활동단체 대표들로 구성-대표성문제 해결
- 위원회의 위원장=민간 위촉자로 내부에서 호선
- 위원회 운영에 민간공익활동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간여 (사무국운영 등)
- 민간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충성도·전문성이 높은 편

(2) 위원회가 기본계획 혹은 기본정책에 실질적으로 간여

- 심의·자문의 기능과 정책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
- 조례에 명시적으로 기본정책에 대한 결정권 부여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시에, 위원회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등에 참여하고 이를 주관한다.

(3) 집행기관(센터 등)을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간여

- 중간지원기관, 사무국, 협의회사무국, 센터에 대한 영향력 확보
-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정한다.
- 센터로부터 위원회가 1년 단위 사업계획-예산계획-사업결과-예산집행결과를 보고 받고 심사한다.

(4) 위원회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편

- 정부의 예산지원, 회의의 정기성·계속성 등을 확보
- 일부위원회 회의 활성화 미흡

(5) 문제점: 시정이 필요한 사항

- ①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 기본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권 부여
- ②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명시적 관여 표기(위원회 주도 공청회, 워크숍 등)
- ③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민간역할 제고, 회의의 활성화 필요
- ④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B. B유형 (정부-민간협의형-정부주도, 민간협의)

- 양성평등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체육진흥협의회,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미세먼지대책위원회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의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

-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표성을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정부정책책임자 혹은 민간위원장이 책임지는 경우에는 민간위원들의 비중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
- 위원회 운영에 민간공익활동가들이 간여하는 것이 불가능
- 민간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충성도·전문성이 높은 편

(2) 위원회가 기본계획 혹은 기본정책에 부분적일 간여

- 심의·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권은 미약한 편
- 조례에 명시적으로 기본정책에 대한 결정권 부여 필요

(3) 집행기관(센터 등)을 위원회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여

- 중간지원기관, 사무국, 협의회사무국, 센터에 대한 영향력 미확보
- 중간지원기관의 책임자 혹은 사무국에 대한 정부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4) 위원회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님

- 정부의 예산지원, 회의의 정기성·계속성 등을 미확보
- 위원회 개최 1회~4회 정도

(5) 문제점: 시정이 필요한 사항 →최소한 A유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필요

- ①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 기본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권 부여
- ②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명시적 관여 표기(위원회 주도 공청회, 워크숍 등)
- ③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민간역할 제고, 회의의 활성화 필요
- ④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공유

C. C유형 (정부주도, 민간협의 미약)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 정책내용·특성으로 보아 이해당사자인 민간주도성이 필요한 위원회

(1) 정부 주도적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으로서 형식적으로 운영

- 민간의 대표성 구성시에 조례에 명시적 언급 없이 도지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정부정책책임자 혹은 민간위원장이 책임지는 경우에는 민간위원들의 비중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
- 위원회 운영에 민간공익활동가들이 간여하는 것이 불가능
- 민간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충성도·전문성이 낮은 편

(2) 위원회가 기본계획 혹은 기본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대단히 어려움

- 심의·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권은 없는 편

(3) 집행기관(센터 등)을 위원회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감시·감독

- 중간지원기관, 사무국, 협의회사무국, 센터에 대한 영향력 미확보
- 중간지원기관의 책임자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

(4) 위원회의 활성화 수준이 저조한 편

- 정부의 예산지원, 회의의 정기성·계속성 등을 미확보
- 위원회 개최 1회~2회 정도

(5) 문제점: 시정이 필요한 사항 →최소한 A유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필요

- ①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 기본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권 부여
- ②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명시적 관여 표기(위원회 주도 공청회, 워크숍 등)
- ③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민간역할 제고, 회의의 활성화 필요
- ④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공유

D. D유형 (정부주도, 단순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함)

- 정책자문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의회, 사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정책심의 및 자문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1) 정부가 해당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필요로 하여 대표성 구성

- 민간의 대표성 구성 시에 심의 및 자문을 획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정부정책책임자 혹은 민간위원장이 책임
- 위원회 운영이 정부주도로 실행
- 민간위원들의 위원회 참여는 자문중심으로 이루어짐

(2) 위원회가 기본계획 혹은 기본정책에 영향력은 자문으로 한정

- 심의·자문의 기능을 수행
- 정부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음(자문위원회 예외)

(3) 집행기관(센터 등)을 위원회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감시·감독

- 민간위원들이 중간지원기관, 사무국, 협의회사무국, 센터에 대한 영향력 미확보
- 중간지원기관의 책임자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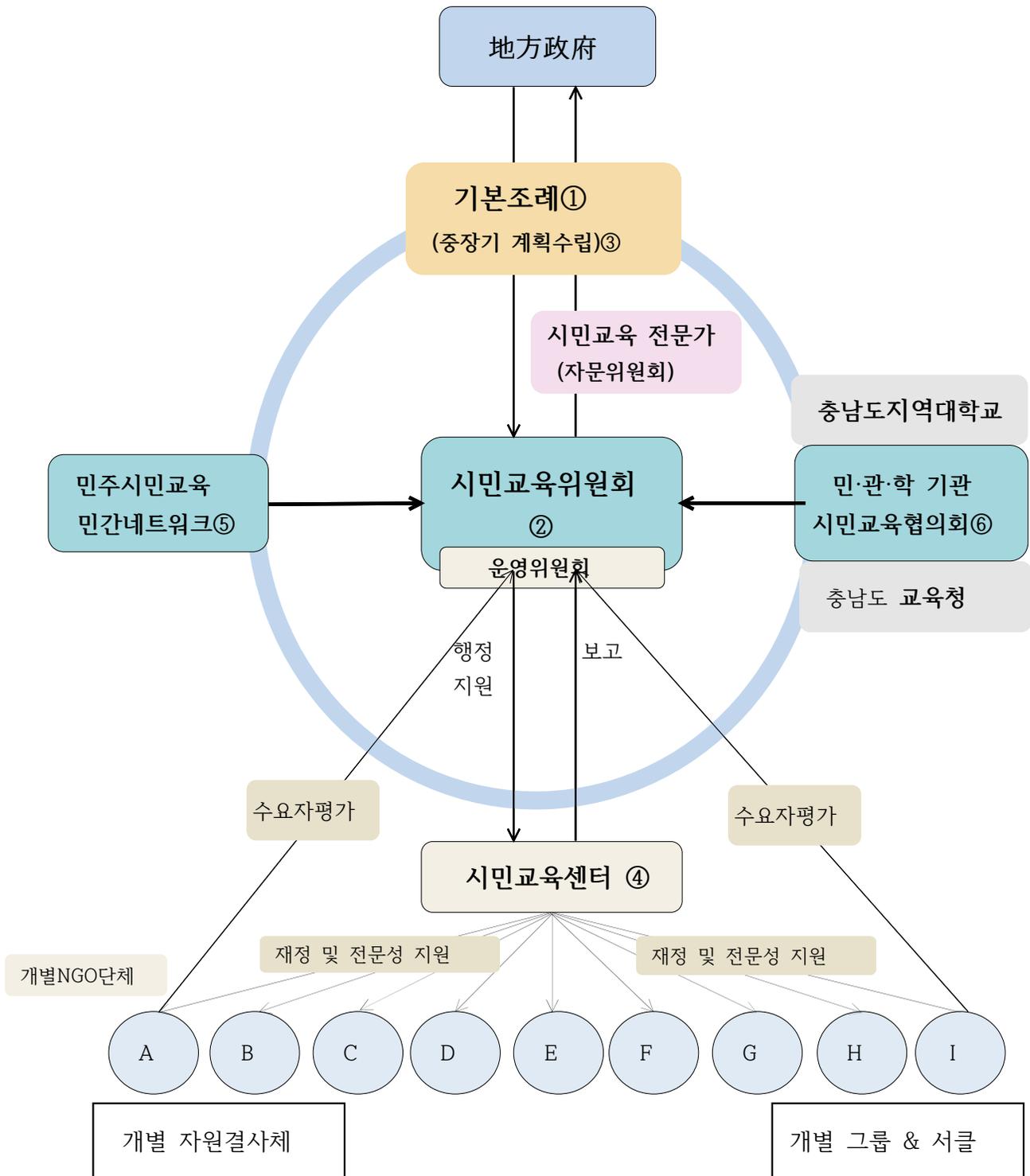
(4) 위원회의 활성화 수준이 대단히 저조

- 정부의 예산지원, 회의의 정기성·계속성 등을 미확보
- 위원회 개최 1회~2회 정도

(5) 문제점: 시정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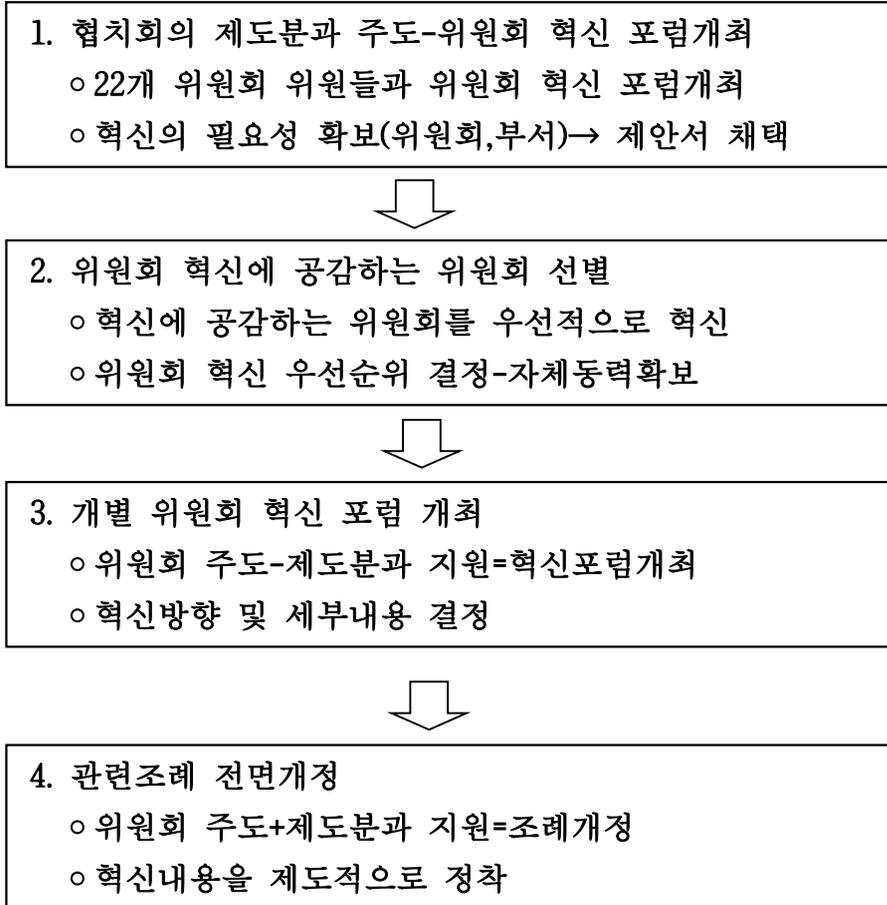
- 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 기본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권 부여
- ②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명시적 관여 표기(위원회 주도 공청회, 워크숍 등)
- ③ 자문위원회 성격에 한정하더라도 민간역할 제고, 회의의 활성화 필요
- ④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정부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민간협의 강화 필요

□ 민관협치와 위원회의 역할 모형 (민주시민교육 조례)



4. 협치기반형 위원회 개선방안

(1) 위원회 혁신 로드맵



(2) 위원회 혁신의 기본 원칙 및 방향

- 해당 위원회의 위원회와 해당부서가 주도적으로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 제도분과 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혁신을 진행한다.
- 협치회의는 ‘위원회 혁신포럼’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한다.

(3) 위원회 혁신을 위한 기본원칙

- 민간역량(민간 네트워크, 민간 전문성, 민간 경험 축적, 현장 활동성 수준 등)이 준비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혁신한다.
- 가능하면, C유형의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위원회 혁신에 따른 효능감을 극대화한다.
- 위원회 자체에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동력을 확보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혁신한다.

(4) 포괄적인 위원회 혁신정책의 제안

- ① 모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확대
- ② 회의의 정시성 및 지속성 확보
 - 개별 위원회의 전체회의 분기별 1회 (분과회의 년6회)
- ③ 민간 파트너의 역할 제고를 위해 심의·의결권 확보
- ④ 기본계획 수립 시에 위원회의 역할 제고
- ⑤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 위탁 기관의 사업보고 청취권을 위원회에 부여

5. 위원회 혁신의 기대효과

(1)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민관협치 강화

- 협치기반형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정책분야별로 정책제안이 도민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해당 도민들의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 그 결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포럼, 참여적 의사결정 등을 사용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2) 도민들의 불만해소로 잠재적 갈등을 사전에 해결

- 정책형성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표출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결
- 정부-도민의 소통방식이 상호주의적(reciprocal communication)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표출이 집계되고 사전에 인지되는 것이 용이하다.
-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민간집단 내의 이해충돌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정부에 정치적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3)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정책자원을 확대할 수 있다

- 민간 네트워크 자원+현장정보+현장 전문성을 정책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 정부가 민간 네트워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들을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과시적인 성과기대
- 현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과제를 주민적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

(4) 사회적 학습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실현

- 위원회 주도의 세미나, 포럼, 워크숍,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사이에 사회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 도민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쌓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한다.
- 문제해결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훈련하여 시민의식을 함양할 기회

(5)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 ①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는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 ② 정부를 자신들의 정부로 느끼는 효과확대-세금 책임성 확대-공화주의 확대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협치로
민주적 가치 실현! ”



▣ 지정토론

충청남도 민관협치형 위원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김용현(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민관협치형 위원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김용현(충남연구원)

1. 충청남도 위원회 현황

- 2018년 말 기준, 충남 130개 등의 위원회 운영 (중부매일, 2019년 9월 30일 기사)
- 충남 130개 중 23개(17.7%)등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름만 있는' 위원회 해마다 증가
 - 충남의 위원회 미개최율은 2016년 11.1%, 2017년 16.8%였음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했지만 실적은 저조
 - 충남은 3년간 20개가 신설되었지만 폐지는 단 2개임
-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2. 위원회의 문제점('17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27%), 형식적 운영(25%),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18%)=도민의 참여 미약(18%)의 순으로 나타남
 - 그 밖에도 여러 위원회의 난립(6%), 회의내용 비공개(2%)=회의내용의 부실작성(2%)=위원의 과도한 겸직 및 연임(2%) 등이 있음
-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으로, 위원회 운영과 도행정과의 연결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도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위원회 운영과 도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형식적 운영항목에는 3번 회의 중 2번이 서면심의이거나 거수형태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존재하여 참여위원들의 의무참여 경향이 나타나고, 위원회 운영이 이미 정해진 의견을 묻고 말해 반영되지 않음 등의 답변이 나타남

- 형식적 운영 및 당연직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함
-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은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의 전형적인 사례임
- 위원회 운영에서 정책토론이 어렵고 심의안건이 너무 많거나 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것은 형식적 운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방증함
 - 위원회가 단순심의 등의 기능적 역할만 수행할 뿐 회의결과에 대한 위원간 공유기회가 부족
-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 항목에서 위촉직은 참여도는 좋은 반면 당연직의 미온적 참여가 눈에 띈다
- 기타의 응답에서 위원회는 전문분야 위원이 추천되어야 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 확대가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를 다양화해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되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방증임
- 도민의 참여미약으로 인한 참여위원 선정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함
 - 민관협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에서 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에서 도민 참여비율은 20% 이상으로 의무조항 신설(조례개정)
 - 민간위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고 같은 사안에 너무 많은 보고를 함으로써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원회의 증가로 유사·중복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위원회가 필요할 때만 개최되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참여위원이 안전에 대하여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음
 - 위원회가 단순한 거수기 기능으로 전락하기도 함
- 위원회 간 중복업무가 많으므로 통합되어야 할 유사 위원회가 존재함
 - 법정위원회 수도 과다하므로 정리가 필요함
 - 다수의 유사 위원회로 인한 경비의 과다소요로 조례의 정비 필요함
 - 도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 위원회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성격과 역할에 따라 탄력적·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함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정비지침 마련함(2015.9). 가령, 실적저조위원회(최근 1년·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유사중복위원회(유사 중복기능 수행 위원회 다수 존재로 비효율 증대) 등

- 위원회의 환류가 원활하지 않음. 특히 평가에 대한 환류가 필요함

3. 위원회 활성화 방안

- 첫째, 주기적인 위원회의 개최로, 조사 참여위원들은 1년에 최소 1회 개최하거나 분기별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현재는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존재하며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위원회를 연2회 정례화하고 필요시에 수시 개최해야 함(필요시 소위원회형으로 운영)

-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12년 1회 이후로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음

- 법령이나 조례개정 통한 정기적인 분기별 개최

- 둘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간 소통이 필요함. 현재는 서면심의 등으로 참여위원간 소통이 부재하므로 참여위원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논의의 주제에 따라 참여위원간의 긴밀한 소통을 요하기도 함.

- 위원회 역할에 대한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학습이 요구됨

- 당연직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운영도 실질적인 토론이 되면서 내실화를 이루어야 함

- 셋째, 참여위원들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위원회 중에는 전문성 있는 위원회(가령, 도시재생위원회)가 많으므로 위원구성이 중요하고 전문성 있는 다양한 참여위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로 잘못된 심의하는 경우도 있음).

-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별도구성 및 운영(공무원 중심, 전문가 중심, 민관 공동, 민간 중심의 4가지로 분류 가능)

- 분기별 개최를 통한 기존 위원들 소통기회를 늘려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맵핑을 통한 DB 구축

- 조례 개정을 통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 넷째, 위원회의 논의내용 및 결과를 반드시 회람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수립 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 연간사업, 예산, 일정, 내용 등 전체내용 설명 필요(방문심의회가 서면심의회보다는 낫지만 연초에 전체회의 필요함)
 - 가령, 해운항만과에서 시군 연안관리 전체계획을 소개해주고 심의요청해주면 더욱 좋은 심의회 될 것임(지역연안관리 심의회)
 -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도정에의 기여)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요함 (위원회 구성 적절여부, 논의의제 적절여부, 운영과정 등)
- 다섯째, 각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실태점검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함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협치로
민주적 가치 실현! ”



▣ 지정토론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개선 체계 구축 필요성

박기남(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개선 체계 구축 필요성

박기남(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 위원회 기능

- 협치를 실현하는 법정 기구
- 심의 자문 기능에서 정책 결정 기능으로 확대 필요

2. 위원회 구성 개선 필요

- 위원 구성 : 민간 시민사회 비율 확대 필요
- 위원 여성 비율 확대 : 정책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 위원 구성 : UN 9개 주요 그룹 포함(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이주민, 과학기술,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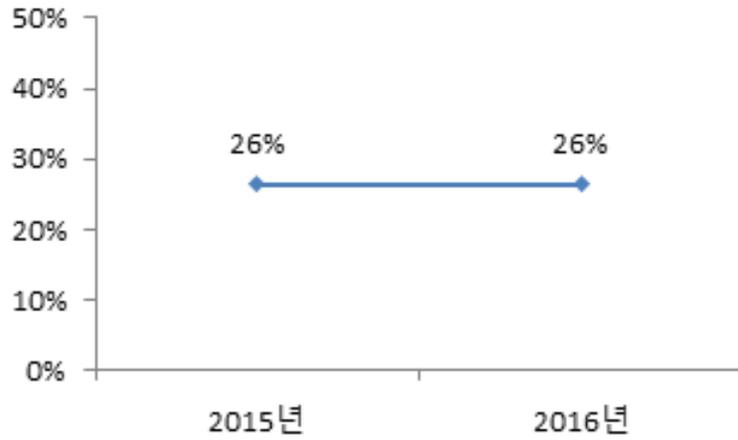
3. 위원회 운영 개선

- 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 위원회 운영을 관련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 방식 등의 모색을 통한 실질적인 기능으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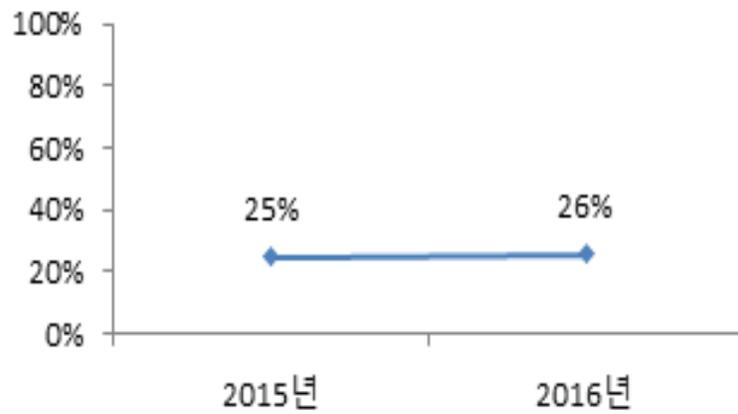
4. 아산시위원회 운영 현황 사례(표1)

아산시 각종 위원회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위원회 수	186	176
전체 위원 수(명)	2,758	2,713
남성위원(명)	2,055	2,029
여성위원(명)	726	717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 %)	26%	26%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수	32	33
(여성위원 40% 이상 비율 %)	25%	26%
여성위원 없는 위원회 수	26	25
(여성위원 없는 위원회 비율)	20%	20%
구성 위원회 수	128	128
(구성 위원회 비율 %)	69%	73%
미구성 위원회 수	58	48
(미구성 위원회 비율 %)	31%	27%
운영 위원회 수	88	98
(운영 위원회 비율 %)	47%	56%
정비 위원회 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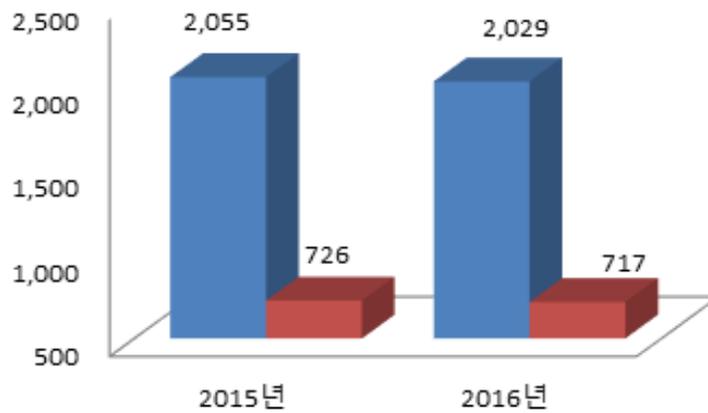
아산시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



아산시 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 남성위원(명) ■ 여성위원(명)



2016년 위원회 운영 현황

번호	자치법규명	위원회명	구성 현황(명)			여성위원 비율
			전체	남	여	
1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18	18	0	0%
2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1	11	0	0%
3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노동상담 운영위원회	7	7	0	0%
4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5	5	0	0%
5	아산시 보건건강료 운영협의회 조례	보건건강료 운영협의회	192	192	0	0%
6	아산시 개성화사업 운영 규정	아산시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6	6	0	0%
7	아산시 고문번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아산시 고문번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7	7	0	0%
8	아산시 국·실·과·소간 협조적 업무추진 규정	업무조정위원회	9	9	0	0%
9	아산시 기획업무 규칙	기획예산위원회	6	6	0	0%
10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아산시상징물관리위원회	6	6	0	0%
11	아산시 시경조정위원회 조례	시경조정위원회	6	6	0	0%
12	아산시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	7	7	0	0%
13	아산시 포상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5	5	0	0%
14	아산시 기록관 운영 규칙	기록물평가심의회	5	5	0	0%
15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정보공개심의회	5	5	0	0%
16	아산시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7	7	0	0%
17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	7	7	0	0%
18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8	8	0	0%
19	아산시 농경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농경자문위원회	15	15	0	0%
20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20	20	0	0%
21	아산시 금고 지정 운영 규칙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0	9	0	0%
22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아산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5	5	0	0%
23	아산시 보안업무 규정	보안심사위원회	6	6	0	0%
24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토지평가협의회	13	13	0	0%
25	아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11	11	0	0%
26	아산시 사전제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사전제해영향성검토위원회	32	31	1	3%
27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실무협의회	21	20	1	5%
28	아산시 설계심사 운영 규정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220	209	11	5%
29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	15	14	1	7%
30	아산시 노사민경협의회 운영 조례	노사민경협의회	13	12	1	8%
31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12	11	1	8%
32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11	10	1	9%
33	아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아산시 농업·농촌정책 자문위원회	31	28	3	10%
34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아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20	18	2	10%
35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29	26	3	10%
126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운영위원회	13	3	10	77%
127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	15	3	12	80%
128	아산시경신문 조례	아산시경신문편집위원회	7	1	6	86%

- 정책 결정 기능 위원회 여성비율은 더욱 낮아지고 실천 위주 위원회 여성비율 높음
-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개선 체계 구축 필요.
- 시민참여를 통한 상설 운영이 시급한 위원회부터 개선운영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협치로
민주적 가치 실현! ”



▣ 지정토론

**청년,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로 성장하기**

이민주(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

청년,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로 성장하기

이민주(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

저는 청년정책 심의기구로는 제1기 충남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김유리, 2016.09.26.~2018.09.25.)에서 활동 후 현재 제2기 충남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박종진, 2018.10.15.~2020.10.14.)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여기구로는 제1기 충남청년네트워크(2018.12.15.~2020.12.14.)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페이스북에 뜬 위원모집공고문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간단한 면접 후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구분	제1기 충남청년정책위원회	제2기 충남청년정책위원회
설치근거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수	20명	20명
위원회 구성	위촉직(13명), 당연직(7명)	위촉직(11명), 당연직(7명), 도의원(2명)
위원장	김유리(여성)	박종진(남성)
위원회 주요활동 (분과위 따로 없음)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워크숍 및 공식회의(4회) -지역별 간담회(월1회 진행) -청년정책 거버넌스 워크숍(5회) ☞주거, 부채, 청년센터 등 5가지 주제별로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충남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의견전달 -공식회의(1회), 비공식회의(2회)

* 제1기 위원이 제2기 위원으로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수(4명)

* 2018년 12월 참여기구로 충남청년네트워크(187명, 위원장: 지민규) 발족

☞ 시군별 대표선정 후 지역별 월1회 자체회의 진행

제1기 청년정책위원회는 담당부서가 따로 없이 청년정책 T/F팀에서 담당을 했고, 현재는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청년과 청년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수찬 교수님의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유형 분석’ 중 청년정책위원회는 B유형(정부-민간협의형-정부주도, 민간협의)에 가깝습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의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

- ☞ 위원회 구성에 있어 행정의 주도적으로 참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민간에서 호선
안전별로 간담회 및 회의가 필요할 시 단체카카오톡방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행정과 논의 후 회의 자체적으로 진행

(2) 위원회가 기본계획 혹은 기본정책에 부분적으 간여

- ☞ 충남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자문진행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사업별 분석(4대 정책 8개 분야 104개 정책)
 검토 및 자문 진행
10월 중 충남청년네트워크와 합동 토론회 개최예정

(3) 집행기관(센터 등)을 위원회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여

- ☞ 청년센터(중간지원조직) 없음

(4) 위원회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님

- ☞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예산 없음
 위원회 (비)공식회의 1년에 4회 정도 진행



제1기 충청남도청년정책위원회 단체사진



제2기 충청남도청년정책위원회 단체사진

광역단위 위원회인 충청남도청년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시군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원회는 각 읍면마다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읍면 위원회 중 청년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 행정에 자료를 요청해 받아봤습니다.

*청년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18세에서 만45세 사이

읍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인원 (청년수)	37명 (2명)	26명 (1명)	25명 (1명)	27명 (3명)	28명 (0명)	25명 (1명)	26명 (0명)	19명 (0명)	26명 (1명)	24명 (0명)

☞ **총 청양군 주민주치(위원)회 위원 269명 청년은 9명** (9명 모두 40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다시한번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에서 위원회를 경험한 20대 여성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청년은 사실 자치활동 중 하나인 위원회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고, 지인의 추천이나 행정에서 요청이 와 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평일 낮 시간을 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반차를 내거나, 주말에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 ‘**자치역량**’ 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첫째, 공무원과 행정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는지,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세워지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년문제에 관심을 두기란 힘들지만 그래도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행사나 타 지역의 청년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낸 저의 의견이 청양군이나 전체 청년을 대표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부하고, 청양군청년네트워크 등에 참여해서 다른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셋째, 광역단위 위원회인만큼 시군 곳곳의 청년활동가를 만나 네트워킹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동료로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형식적이거나 회의에 ‘동원’ 된다는 느낌이 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다음에는 위원회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또한 기회가 없거나,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지역에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심분야에 맞게 위원회에 적극 들어가 의견을 내고, 정보를 취득하고,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생각해봤습니다.

1. 홍보의 다각화 및 창의적인 홍보 문구를 통한 관심유도

- ☞ 청년세대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나 SNS, 유튜브 등에 관심이 많기에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하되 현수막 게시를 할 때도 흥미를 자극할만한 문구 등을 넣어 홍보를 하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2. 기초단위 위원회부터 경험하기

- ☞ 광역단위 위원회는 물리적으로도 멀기에 차가 없는 청년은 참여하기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광역단위보다 기초단위의 문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위원회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심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3. 적절한 피드백과 보상

- ☞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바나 생업 중에 휴가를 써서 오는 경우도 있기에 최소한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위원회 활동 시에도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작은변화’를 느끼게 하거나, 회의 참석료나 자문료 등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협치로
민주적 가치 실현! ”



▣ 지정토론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

최재권 ((사)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이사장)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

민관협치, 위원회로부터

최재권((사)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이사장)

충청남도에는 780개(법률정보센터)의 조례가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는 142개다. 발표문에서는 142개의 위원회 중 협치기반형 위원회로 22개 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발표문은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개요, 위원회의 기본성격,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유형분석, 협치위원회 개선방안, 위원회 혁신의 기대효과를 담고 있다. 발표문이 충청남도의 현실을 잘 담고 있고 내용이 충실하기에, 발표문에 대한 토론보다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그리고 천안의 사회적경제육성 위원회 사례를 들어 위원회 활성화방안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천안시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건 2009년 9월 11일이다. 이 조례는 2013년 5월 13일 전부개정되었고, 수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르고 있다.

이 조례 제7조제1항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다. 조문제목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천안시는 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천안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로부터 수차례 육성계획 수립 제안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18년 민간위원들의 위원회 기능에 대한 불만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제안이 받아들여져 실무위원회가 가동되게 되었다.

2019년 첫 육성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과 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민간의 합일된 제안이 실무위원회에 위임되었고, 실무위원회의 회의가 수차례 이어지며 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용역과 센터 설치가 2020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조례 제정으로부터 10년이 되어서야 조례대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실무위원회가 가동되었기에 지방정부와 민간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1년에 2회 열리는 육성위원회만으로는 협치를 이뤄낼 수 없으며, 지방정부와 민간 간의 간극을 좁히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육성위원회가 연 2회만 열리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 보완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 환류하는 과정은 제도와 의식이 행위로 나타나고 이 행위는 관행화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관료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제는 관료중심의 정부 운영만으로는 복잡다기하게 제기되는 사회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민간의 전문성이 정부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민관협치는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 민관협치를 잘 이루려면 제도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제도와 의식의 결과인 관행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태도다. 민간을 수평적 정부운영 파트너로 대할 때 분권이 가능하고 분권은 참여와 자치를 가능하게 한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경우 태도 변화가 조례에 없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고 실무위원회는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이끌며 결과적으로는 관행을 협치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면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을, 민간은 정부를 수평적 파트너로 보는 것이다.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협치로
민주적 가치 실현! ”



▣ 지정토론

충청남도 위원회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구상(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충청남도 위원회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구상(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 명맥만 유지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도정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추진배경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속적 지적에 따른 방안 모색

I 위원회 현황 ('19.9월말 기준)

□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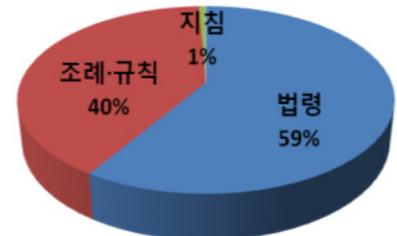
- 최근 행정운영의 전문성 확보·국정 및 도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점차 증가

연 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위원회수	119	128	141

* 2016년 이후 공익활동촉진·생활임금심의·청년정책추진 등 14개 신설

□ 설치 근거별 현황

합 계	법령	조례·규칙	지침
141	83	57	1



※ 지침 근거 :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 기능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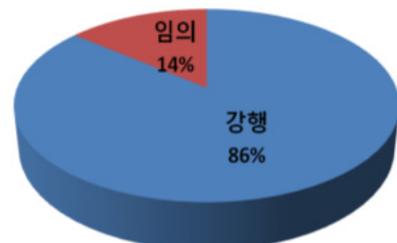
합 계	의결	심의	자문
141	26	83	32



※ 의결과 심의 구분 : 위원회 결정의 행정행위 구속 여부

□ 설치 성격별 현황

합 계	강행	임의
141	121	20



※ 설치 성격 구분 : 법령 또는 조례 상 위원회 설치 여부

II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운영 및 관리 측면

1 개최실적 저조

- ✓ 2019년 중 141개 위원회에서 총423회 개최(서면 86회 포함 / 평균 3회)
 - 미개최 현황 : 9월말 33개(23.4%) → 12월말 12개(8.5%)
- ✓ 과도한 서면회의 개최로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
 - 일부 '안건이 소수(1~2건), 위원 간 회의 일정 조율 어려움' 등의 사유

○ 연간 개최 횟수가 적거나 불분명한 운영 규정

- 전제 위원회 141개 중 '필요사수시' 110개(78%), '연1회(정기회)' 18개(13%)
⇒ [필요사·수시] 중 미개최 24개(22%), 1회 32개(29%)/[연1회] 중 미개최 7개(39%), 1회 5개(28%)

○ 위원회 기능상 개최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 존재

- 도로명주소위원회(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도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주민청구시) 등

2 형식적 운영 및 회의결과 피드백 부족

- 법령상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형식적 운영되거나 회의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관심도 저하 및 도정 신뢰 저하 우려

|| 2017년 충남연구원 「충남 각종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

- ✓ 운영상 문제점 : 형식적 운영 25% / 회의결과 피드백 안됨 : 50%

3 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 미흡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나,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 저조
 - 담당자의 회의록 작성에 대한 부담과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 부족
 - * 「민관협치-위원회」에 '19년 중 등록된 회의결과 총 192건(전체 423 건의 45% 수준)
-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한 「위원회 관리 시스템²⁾」 활용 미흡

1)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신설 2017.8.17./김종문의원 대표발의>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구성 측면

1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 유사·중복

○ 위원회 신설 시 기존 위원회와 성격, 기능 등의 중복여부 검토 미흡

✓ 141개 위원회별 주관부서 중 10개 이상 설치된 부서는 기획조정실(15), 재난안전실(10), 경제통상실(11), 자치행정국(13), 저출산보건복지실(11), 기후환경국(10), 국토교통국(21)

※ 이는 위원회 활용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능의 중복 가능성도 높음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총괄부서 사전 협의³⁾
- ▶ 2017년 이후 신설 위원회 27개 중 12개(44.4%) 미협의 설치

○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의 강행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제재 어려움

2 특정인의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

○ 한정된 인력풀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특정인 중복 위촉

- 중복(3개 초과) 및 연임 금지(3회 초과)를 규정한 위원회 관리조례⁴⁾ 위반
- 김△△(정책자문위원회 등 5개), 이△△(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5개)

|| 위촉직 위원의 중복참여 현황(총 350명) ||

합 계	2개	3개	4개	5개
282	222	53	5	2

○ 일부 위원회의 경우, 특정인이 장기 연임하는 사례 존재(3회 초과 38명)

- 김△△(균형발전위원회 5회/10년), 이△△(사회복지위원회 4회/8년) 등
- 아울러, 15개 위원회에서 86명이 3회 이상 연임 중으로 개선 필요

○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행정편의로 위촉(연임)하는 경우 여건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불가

2) 위원회 관리 시스템 : 위원회 현황, 운영회의 등 체계적 관리,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도민들은 쉽게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3) 제5조(설치절차)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운영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7조(위원의 위촉)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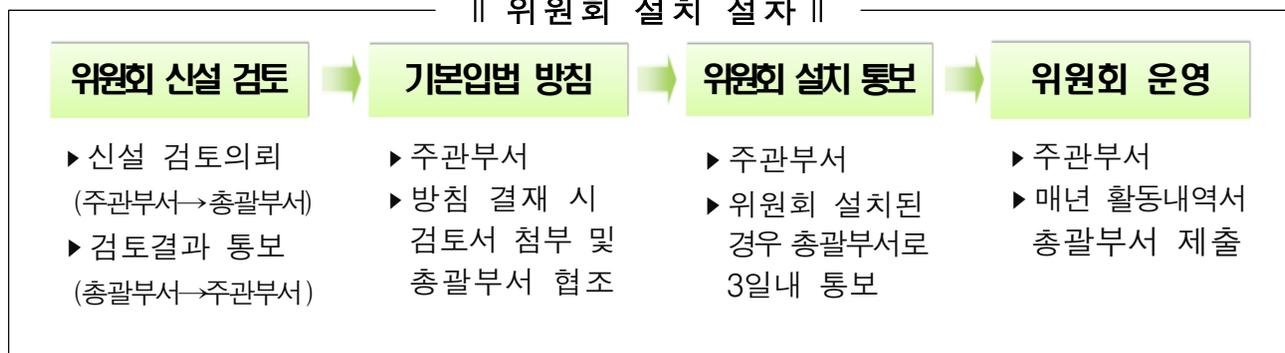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개방성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추진

1. 위원회 신규 설치 규정 준수 및 합리적 적용

○ 위원회 신설·재구성 시 공동체정책관실 사전협의 확행

-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조례 제5조)
- ⇒ 설치근거, 타 위원회와의 중복여부, 위원장 선정의 적정성, 존속기한 등 검토
- * 설치계획 내 위원회 명단 포함 시 위촉 확정자가 아닌 추천자 등의 명단

Ⅱ 위원회 설치 절차 Ⅱ



○ 위원회 신설시 설치근거(조례)에 존속기한 ‘5년 범위’ 로 명시 의무화

-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
- * 2019. 9. 16. 지정근의원 대표(10인)로 일부 조례 개정 발의

Ⅱ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 제16조 Ⅱ

- ✓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함
- ✓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법령개정 노력 및 조례 정비 또는 폐지 검토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5)” 사용 의무화

- 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 개선을 위한 반영 여부를 사전에 체크·보완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기능 강화
- * 온나라 기안(문서작성) ⇒ 문서관리카드 본문작성 ⇒ 서식참조 ⇒ 간이기안문 서식(위원회 전용) 선택

5)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설치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계획서 내에 서식 자동 첨부

2.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 제한

- 3개 초과 위촉, 동일위원회 3회 초과 연임 금지 원칙 준수
 - 위원회 신설·재구성시 위촉자 명단 사전 확인(담당부서 → 공동체정책관)
 - * 메모보고를 통한 대상자 초과 중복 및 연임 검토 의뢰
 -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각 위원회 현황 현행화 실시
 - * 신분확인 가능 범위(성명, 소속, 연락처 등) 내 모든 위원 정보 현행화
 - 위원회 참석이 저조(임기내 출석률 50% 미만) 한 위원 위촉 제한
- 3개 초과 위촉 위원(15명), 3회 초과 연임 위원(38명) 중점 관리
 - 해당 위원에게 근거규정 일괄 안내 후 위원회별 임기만료 시 배제
 - * 예외 규정⁶⁾ 대상이 아닌 경우 계획수립 시 사유 및 필요성 검토 후 반영

3. 위원회 정보 및 활동에 대한 공개 확대

-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한 위원회 각종 정보 제공(2018.11.1. 시행)
 - 정보기능 「위원회 목록」+ 활동공개기능 「회의록 및 회의결과」 강화

✓ 기존 「충남넷」의 위원회자료방, 도정주요위원회를 통합·운영

- 위원회별 개요, 명단, 회의록, 활동사항 등 공개범위 확대
- 도민들의 접근성 용이

✓ 홈페이지 기능 개선(보완)하여 행정포털 관리자모드를 통해 위원회 담당자별 관리 용이

|| 민관협치-위원회 공개 현황 ||

- 행정포털 「위원회 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
 - 회의 일정 및 회의 결과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 사안 발생 시 현행화로 정보 공개 강화

4. 회의운영 원칙 준수 및 민관협치 홈페이지를 통한 피드백 강화

- 회의개최 통지 7일전, 회의자료 최소 3일전 제공 준수(조례 제11조)
 - 사전 회의자료 제공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로 위원회의 질 제고

6) 조례 제8조 2호(3회 초과 중복, 연임 예외)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5.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회의 개최

- 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시의성 강화
 - 특정 사유 없이 연말 개최 및 서면 개최 등으로 위원회 실효성 논란 차단
 - * 개별 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 수립(1월) 후 총괄부서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특이 사유*를 제외하고 형식적인 서면 회의 개최 금지
 - 위원회의 철저한 관리와 위원들의 책임성 담보 및 권한 부여를 위해 소집회의 개최 지향
 - * 특이사유 : 심도있는 검토기간 필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 조례 등 근거 규정 등
 - ⇒ 서면심사 후 반드시 소집 회의를 통해 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
- 정기적(반기별) 위원회 운영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 실태에 대한 담당자 및 위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로 위원회의 질적 제고

6. 위원회 관리 및 정비 강화

- 분기별 운영상황 점검 및 연간 활동내역을 통한 시정·보완
 -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미개최 및 저조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 수립
-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폐지 여부 검토
 -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 개정 노력 및 조례 정비 또는 폐지 검토

IV 앞으로 추진계획

□ 부서별 협조사항

- (전부서)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시 공동체정책관실 사전협의 확행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사항 검토 및 이행 노력(체크리스트 활용)
 - 「위원회 관리 시스템」 현행화 및 활용 의무화
 - * 위원회 기본정보 및 회의 관련 결과 등 사안 발생 시 즉시 현행화
 - 연간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제출
- (공보관) 2020년 홈페이지 개선 「위원회관리시스템」 추가 정비

< 지정근의원 대표발의(2019.9.16.) 일부 개정 내용 반영 >

제5조 설치절차

- ▶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 구성계획 및 임기, 존속기한 등을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이행

제6조 존속기한

- ▶ 위원회 설치 시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함

제8조 위원제한

- ▶ 동일인 3개 초과 중복위촉 및 동일위원회 3회 초과 연임 금지
- ▶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
 - 장기 치료·6개월 이상 해외여행, 스스로 위촉해제 원한 경우 제외

제8조2 위원제척·기피·회피

-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 관리정비

- ▶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별 활동내역서를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담당부서의 장에게 운영의 시정·통폐합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